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10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신다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쉼드
담당변호사 조재황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21.경부터 2025. 3. 30.경까지 총 27회 2025. 2. 24.경 6회 총 33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관리하는 IP인 (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D(D,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



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다.

1)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누군가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여 C 서버로 전송하는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별지 'D 크랙 사용자료' 기재와 같이 IP 주소 '(IPv4 1 생략)'가 할당된 곳에서 기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 2개가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IP 주소를 관리하던 B 주식회사는 C이 주장하는 침해 일시(① 2025. 2. 23. 18:00, ② 2025. 2. 24. 00:51, ③ 2025. 2. 24. 21:35 ~ 2025. 2. 24. 21:48, ④ 2025. 2. 26. 00:23 ~ 2025. 2. 26. 00:41, ⑤ 2025. 3. 30. 19:34)에 위 IP 주소를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는 피고인이고, 위 IP 주소가 설치된 장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세종 E아파트, F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C 서버로 수집되었다는 침해 기기 중 1대에 대한 정보에는 사용자명이 'G'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성 및 이니셜과 동일하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자, 건축, 기계, 재료공학 부문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유



한요소 해석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피고인은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직장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 설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 서버로 수집되었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기 2대의 MAC 주소(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네트워크 장치에 부여된 고유 번호)는 1번 기기의 경우(MAC주소 1 생략), 2번 기기의 경우 (MAC주소 2 생략), (MAC주소 3 생략), (MAC주소 4 생략), (MAC주소 5 생략)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 2대(맥북과 레노버 노트북)의 MAC 주소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맥북(Hostname: H)의 MAC 주소는 (MAC주소 6 생략), (MAC주소 7 생략), (MAC주소 8 생략), 레노버 노트북(Hostname: I)의 MAC 주소는 (MAC주소 9 생략), (MAC주소 10 생략), (MAC주소 11 생략)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맥북에 대한 MAC 주소가 '(MAC주소 6 생략)'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사용기기 등록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 기기 2대의 MAC 주소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C의 서버로 수집된 MAC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위 2대의 기기 이외에



C의 서버로 수집된 것과 동일한 MAC 주소가 부여된 다른 네트워크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별지 'D 크랙 사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25. 2. 21. 20:30:54경 실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IP 주소(IPV4 1 생략)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세종 E아파트, F호'에 할당된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출퇴근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2. 21. 08:5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날 21:40경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별지 'D 크랙 사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25. 2. 24. 2번 기기에 대하여 19:48:57경부터 20:19:17경까지, 21:31:56경 및 22:36:37경 실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번 기기에 대하여 21:35:16경, 21:48:13경 실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IP 주소는 세종시에 할당된 위 주소와 동일한데,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출퇴근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2. 24. 09:15경 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날 20:36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별지 'D 크랙 사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25. 3. 30. 19:34:17경 실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IP 주소는 세종시에 할당된 위 주소와 동일한데,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출퇴근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3. 30. 12:24경 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19:24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31

판사 최유빈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31

크랙 사용자료 - MAC 주소 사용자 등

No	침해기간(한국시 기준)	침해횟수	프로그램명	IP 주소	MAC 1	MAC 2	MAC 3	MAC 4
1	2025-02-21~2025-03-30	27						
2	2025-02-24	5						

위 크랙 자료 내용의 상세 IP 주소 로그 기록

1. 컴퓨터 (MAC 주소 사용자)

No	침해기간	한국시 기준(+9시간)	프로그램명	IP 주소	MAC 1	MAC 2	MAC 3	MAC 4
1	2025-03-30 16:34:17	2025-03-30 19:34:17						
2	2025-02-25 15:41:05	2025-02-26 00:41:05						
3	2025-02-25 15:23:08	2025-02-26 00:23:08						
4	2025-02-24 12:48:13	2025-02-24 21:48:13						
5	2025-02-24 12:35:16	2025-02-24 21:35:16						
6	2025-02-23 15:51:59	2025-02-24 00:51:59						
7	2025-02-23 09:00:20	2025-02-23 18:00:20						
8	2025-02-23 08:49:42	2025-02-23 17:49:42						
9	2025-02-23 08:45:24	2025-02-23 17:45:24						
10	2025-02-23 07:20:23	2025-02-23 16:20:23						
11	2025-02-23 06:26:45	2025-02-23 15:26:45						
12	2025-02-23 03:48:31	2025-02-23 12:48:31						
13	2025-02-23 03:33:36	2025-02-23 12:33:36						
14	2025-02-23 02:46:01	2025-02-23 11:46:01						
15	2025-02-23 02:33:02	2025-02-23 11:33:02						
16	2025-02-23 02:12:20	2025-02-23 11:12:20						
17	2025-02-23 01:01:09	2025-02-23 10:01:09						
18	2025-02-23 00:53:39	2025-02-23 09:53:39						
19	2025-02-23 00:50:23	2025-02-23 09:50:23						
20	2025-02-22 23:59:04	2025-02-23 08:59:04						
21	2025-02-22 23:54:46	2025-02-23 08:54:46						
22	2025-02-22 23:47:09	2025-02-23 08:47:09						
23	2025-02-22 16:56:42	2025-02-23 01:56:42						
24	2025-02-22 16:22:15	2025-02-23 01:22:15						
25	2025-02-22 16:19:25	2025-02-23 01:19:25						
26	2025-02-22 16:10:23	2025-02-23 01:10:23						
27	2025-02-21 11:30:54	2025-02-21 20:30:54						

첨
부
5

2. 컴퓨터 (MAC 주소 사용자)

No	침해기간	한국시 기준(+9시간)	프로그램명	IP 주소	MAC 1	MAC 2	MAC 3	MAC 4
1	2025-02-24 13:36:37	2025-02-24 22:36:37						
2	2025-02-24 12:31:56	2025-02-24 21:31:56						
3	2025-02-24 11:19:17	2025-02-24 20:19:17						
4	2025-02-24 11:17:53	2025-02-24 20:17:53						
5	2025-02-24 11:07:26	2025-02-24 20:07:26						
6	2025-02-24 10:48:57	2025-02-24 19:48:57						